의 안 번 호			제	ই
의		결	2023.	
연	월	일	(제	회)

의 결 사 항

국 방 개 혁 에 관 한 법 률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〇〇〇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제16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에서 2020년으로 설정한 국방개혁의 목표연도가 경과하여 삭제가 필요함. 또한 해당 조항에서 제시하는 제한적 목표수치를 『국방혁신 4.0 기본계획』(대통령재가, 2023.3.3.) 추진과 연계하여 수정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여군인력의 확대(제16조제1항),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제25조제1항),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제26조제1항), 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제27조제1항)에서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미 해당 목표연도를 도과하였기에 이를 삭제함.
- 나. 여군인력의 확대(제16조제1항, 제2항)에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의 목표수치'를 삭제하고,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제25조제1항)에서 '50만명 목표수치'를 삭제하며,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제26조제1항)에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간부확보의 목표수치'를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중

라. 기 타:1)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제 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를 "위하여"로, "확충하여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여군이 다양한 방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군별·연도별 여군 인력의 비율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을 "여군 비율은 안보환경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를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을 "AI 과학기술 육성의"로,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수준으로"를 "적정 수준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2020년까지 상비병력규모"를 "상비병력 규모"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①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①-
국방부장관은 여성인력의 활용	
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	
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	
기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	위하여
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u>확충하여야</u> 한다.	지속적으로 확충하
	고, 여군이 다양한 방면에서 근
	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u>◊</u> ‡
②여군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	2
각 군별·연도별 여군 인력의	여군 비율은 안보환경 등을 고
비율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려하여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①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①-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	
의 개편과 <u>연계하여 2020년까지</u>	<u>가용자원을 고려하여</u>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①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①-
국군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u>2020년까지</u>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 하여 <u>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u> 병력의 100분의 40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저 정예화)① (생 략)
 - ②예비전력규모는 <u>2020년까지</u> <u>상비병력규모</u>와 연동하여 개편
 - 조정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u>AI</u> 과학기술
<u>육성의</u>
적정 수준의 비율이 유지
<u>될 수 있도록</u>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① (현행과 같음)
② <u>상비병력 규모</u>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구조개혁담당관 연 락 처 (02) 748 - 6424